|  |  |  |
| --- | --- | --- |
|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직업자격제도 잠행규정> 및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직업자격시험 실시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및 주택도농건설부의 통지**  인사발[2015]47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인력자원사회보장청(국), 주택도농건설청(국, 부동산관리국, 건설위원회), 국무원 각 부처·직속기구 인사부서, 중앙관리기업: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주택도농건설부는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육성을 강화하고 부동산중개업의 발전에 적응하며 부동산중개 시장을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무원 기구개혁 및 직능전환 방안>과 <일부 행정심사비준항목 취소 및 조정 등 사항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국발 [2014] 27호)의 '부동산중개사 직업자격 허가' 취소 관련 요구사항을 근거로 하고 기존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직업자격제도 실시 상황에 대한 총결을 바탕으로<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직업자격제도 잠행규정> 및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직업자격시험 실시방법>을 제정하였는 바 아래와 같이 인쇄발부하오니 따라서 집행하기 바란다.  전 인사부, 전 건설부가 발표한 <<부동산중개사 직업자격제도 잠행규정>과 <부동산중개사 직업자격시험 실시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인발[2001]128호)는 이 통지를 발표한 날로부터 폐지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주택도농건설부  2015년 6월 25일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직업자격제도 잠행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부동산중개 전문인력의 육성을 강화하고 부동산중개 전문인력의 소양을 제고시키며 부동산중개 활동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부동산 관리법>, <국무원 기구개혁 및 직능전환 방안> 및 국가 직업자격증 제도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부동산거래 활동에서 공평한 부동산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중고주택 및 신축분양주택의 거간, 대리 등 부동산중개 활동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이 규정의 관할을 받는다.  **제3조** 국가는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능력평가 유형의 직업자격제도를 구축하여 사회 전체를 상대로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능력수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국 전문기술인력 자격증 제도 총괄계획에 편입시킨다.  **제4조**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직업자격은 부동산중개사 보조원, 부동산중개사 및 고급부동산중개사 세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부동산중개사 보조원과 부동산중개사의 직업자격은 통일적인 시험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을 시행한다. 고급 부동산중개사 직업자격 평가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부동산중개 전문인력의 영문명칭은: Real Estate Agent Professionals  **제5조** 부동산중개사 보조원, 부동산중개사 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하여 해당 등급의 직업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등급의 부동산중개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직업능력과 수준을 구비하였음을 명시한다.  **제6조**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주택도농건설부는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직업자격 제도에 관한 정책의 제정을 공동 담당하고 각자의 직책과 업무분장에 따라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직업자격제도에 대해 지도,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한다. 중국부동산감정평가사 및 부동산중개사학회는 구체적인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직업자격 평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2장 시험**  **제7조** 부동산중개사 보조원, 부동산중개사 직업자격시험은 전국 범위내에서 통일적인 시험요강을 적용하고 통일적으로 출제하며 통일적으로 조직하는 시험제도를 시행한다. 원칙상 연 1회씩 실시한다.  **제8조** 중국부동산감정평가사및부동산중개사학회는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직업자격평가에 대한 감독 및 실시업무를 담당하고 시험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험과목, 시험요강, 시험문제 및 시험통과표준을 연구 및 작성한다.  **제9조**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주택도농건설부는 중국부동산감정평가사및부동산중개사학회를 지도하여 부동산중개사 보조원, 부동산중개사 직업자격시험 시험과목, 시험요강, 시험문제 및 시험통과표준을 확정하고 그가 실시하는 부동산중개사 보조원, 부동산중개사 직업자격시헙 업무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제10조**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직업자격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국가의 법률, 법규와 업계표준 및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2) 신의성실, 공평성, 공정성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3) 직업도덕을 지켜야 한다.  **제11조** 부동산중개사 보조원 직업자격시험에 참가하는 자는 이 규정 제10조에 규정한 기본조건을 충족시킴과 더불어 중등전문학교 또는 고등학교 및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제12조** 부동산중개사 직업자격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이 규정 제10조에 규정한 기본조건을 충족시킴과 더불어 다음 조건 중의 어느 하나를 만족시켜야 한다.  (1) 시험을 통과하여 부동중개사 보조원 직업자격증을 취득한 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한 경력이 만 6년 이상이다.  (2) 전문대학 학력을 취득하였고 근무경력이 만 6년 이상이며 그 중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한 경력이 만 3년 이상이다.  (3) 대학교 학부 학력을 취득하였고 근무경력이 만 4년 이상이며 그 중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한 경력이 만 2년 이상이다.  (4) 두개 이상의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근무경력이 만 3년 이상이며 그 중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한 경력이 만 1년 이상이다.  (5) 석사 학력(학위)를 취득하였고 근무경력이 만 2년 이상이며 그 중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한 경력이 만 1년 이상이다.  (6) 박사 학력(학위)을 취득하였다.  **제13조** 부동산중개사 보조원, 부동산중개사 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는 중국부동산감정평가사 및 부동산중개사학회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주택도농건설부가 감제하였고 중국부동산감정평가사 및 부동산중개사학회의 공인이 날인된 해당 등급의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직업자격증>(이하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자격증'으로 약칭)을 발급한다.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자경증은 전국 범위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부정당한 수단으로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국가 전문기술인력 자격시험 기율·규칙 위반행위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장 직업능력**  **제15조** 해당 등급의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국가의 법률, 행정법규 및 부동산중개 업계 관련 제도와 규칙을 준수하고 신의성실, 공평성, 공정성의 원칙을 고수하며 상업비밀을 유지하고 의뢰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직업도덕을 지켜야 한다.  **제16조** 부동산중개사 보조원 직업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직업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1) 부동산중개 업계의 법률, 법규 및 관리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2) 부동산 거래 절차를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일정한 부동산 거래 추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 부동산중개 업무의 일반 업무를 독립적으로 완성할 수 있어야 한다.  (4) 부동산중개사의 지도하에 비교적 복잡한 부동산중개 업무를 완성할 수 있어야 한다.  **제17조** 부동산중개사 직업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직업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1) 부동산중개 업계의 법률, 법규 및 관리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2) 부동산 거래 절차를 숙지하고 비교적 복잡한 부동산중개 업무를 완성할 수 있으며 부동산중개 업무상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3) 풍부한 부동산중개 실천경험을 활용하여 부동산중개 시장의 전망을 분석 및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새로운 부동산중개 업무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4) 부동산중개사 보조원을 지도하고 고급 부동산중개사의 업무에 협조할 수 있어야 한다.  **제18조** 해당 등급의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국가 전문기술인력 재교육 및 부동산중개 업계관리의 관련 규정에 다라 재교육에 참가하여 전문지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직업소양과 업무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제4장 등기**  **제19조**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자격증은 등기서비스제도를 시행한다. 등기서비스의 구체적인 업무는 중국부동산감정평가사 및 부동산중개사학회가 담당한다.  **제20조** 중국부동산감정평가사 및 부동산중개사학회는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자격증 등기 상황을 사회에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자격증 보유자 신용기록을 구축함과 더불어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자격증 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1조**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자발적으로 중국부동산감정평가사 및 부동산중개사학회의 관리와 사회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업무 중에 관련 법률, 법규, 규장 또는 직업도덕을 위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경우 중국부동산감정평가사 및 부동산중개사학회가 등기를 취소하고 직업자격증을 회수한다.  **제22조**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등기서비스기구는 등기서비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와 본 업계의 각 항 관리규정 및 학회의 정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5장 부칙**  **제23조** 시험을 거쳐 해당 등급의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경제 전문인력 직무 시행조례>상의 보조 경제사, 경제사 임직조건을 충족시키는 자의 경우 고용업체는 업무수요에 따라 해당 등급의 경제 전문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24조**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전 인사부, 전 건설부가 인쇄발부한<<부동산중개사 직업자격제도 잠행규정>과 <부동산중개사 직업자격시험 실시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인발[2001]128호)의 요구에 따라 시험을 거쳐 취득한 부동산중개사 종업자격증은 이 규정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중개사 직업자격증과 효용이 동등하다. 시험을 거쳐 취득한 부동산중개사 보조원 자격증은 그 효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제25조**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직업자격시험 실시방법**  **제1조**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주택도농건설부서는 각자의 직책과 업무분장에 따라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직업자격시험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2조**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직업자격시험의 구체적인 업무는 중국부동산감정평가사 및 부동산중개사학회가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3조** 부동산중개사 보조원 직업자격시험은 <부동산중개 종합능력> 및 <부동산중개 실행실무> 두 과목을 설치한다. 시험은 두개 반나절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각 과목의 시험시간은 모두 2.5시간이다.  부동산중개사 직업자격시험은 <부동산거래 제도·정책>, <부동산중개 입문>, <부동산중개 전문기초> 및 <부동중개 업무실행> 네 과목을 설치한다. 시험은 네개 반나절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각 과목의 시험시간은 모두 2.5시간이다.  **제4조**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직업자격시험 각 과목의 성적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시행한다. 규정된 기한 내에 응시과목의 시험에 참가하여 합격해야만 해당 등급의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직업자격증서를 획득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사 보조원 직업자격시험 참가자는 연속적인 두개 시험연도 내에 모든(두개) 과목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부동산중개사 직업자격시험 참가자는 연속적인 네개 시험연도 내에 모든(네개) 과목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제5조**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직업자격제도 잠행방법>(이하 '<잠행방법>'으로 약칭) 제10조의 기본조건과 해당 등급 응시조건 중의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는 경우 해당 등급의 시험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잠행방법>상 해당 등급 응시조건 중의 어느 하나에 부합되고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조건 중의 어느 하나를 구비한 경우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직업자격시험 일부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1)전국 통일적인 시험을 통과하여 경제전문기술자격 '부동산 경제' 분야 초급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중개사 보조원 직업자격시험 <부동산중개 종합능력>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중개 실행실무> 과목의 시험에만 참가하면 된다.  (2) 기존 <<부동산중개사 직업자격제도 잠행규정>과 <부동산중개사 직업자격시험 실시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인발[2001]128호)의 요구에 따라 시험을 통과하여 부동산중개사 보조원 자경증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중개사 보조원 직업자격시험 <부동산중개 실행실무>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중개 종합능력> 과목의 시험에만 참가하면 된다.  (3)전국 통일적인 시험을 통과하여 부동산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한자, 전국 통일적인 시험을 통과하여 경제전문기술자격 '부동산 경제' 분야 중급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국가의 통일적 규정에 따라 고급경제사로 평정·초빙된 자는 부동산중개 직업자격시험 <부동산거래 제도·정책>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중개 입문>, <부동산중개 전문기초> 및 <부동중개 업무실행> 세개 과목의 시험에만 참가하면 된다.  하나 또는 세개 과목의 시험에만 참가하는 자는 하나 또는 연속적인 세개 시험연도 내에 응시과목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직업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  일부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는 시험참가 신청 시 해당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 시험 참가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수속을 밟아야 한다. 시험실시기구는 규정된 절차와 신청조건에 따라 심사한 후 수험표를 발급한다. 시험참가자는 수험표 및 유효한 신분증명을 지참하여 지정된 일자, 시간 및 장소에서 시험에 참가한다.  중앙과 국무원 각 부처 및 산하조직,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업의 인력은 속지원칙에 따라 시험참가를 신청한다.  **제8조** 시험장소는 직할시와 성도(城都)도시의 전문대학교, 중등전문학교 또는 대학입학시험 거점학교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도시에 시험장소를 설치해야하는 필요성이 있을 경우 반드시 중국부동산감정평가사 및 부동산중개사학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시험일자는 매 년 3분기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시험과 교육 분리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시험업무(출제, 문제심사 및 관리 등)에 참여하는 자는 일절 시험에 참가하여서는 아니되며 시험 내용과 관련된 교육업무에 참가하거나 사업을 해서는 아니된다. 응시자의 교육 참가는 자발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시험실시기구와 그 업무인력은 국가 인사고시 업무인력 기율규정과 시험업무의 각 항 규장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하고 업무기율을 준수해야 하며 시험문제의 출제로부터 사용까지 각 단계의 보안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비밀유출을 엄격히 막아야 한다.  **제11조** 시험업무 기율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국가 전문기술인력 자격시험 기율·규정 위반행위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 **人力资源社会保障部、住房城乡建设部关于印发《房地产经纪专业人员职业资格制度暂行规定》和《房地产经纪专业人员职业资格考试实施办法》的通知**  人社部发〔2015〕47号  各省、自治区、直辖市及新疆生产建设兵团人力资源社会保障厅（局）、住房城乡建设厅（局、房地局、建委），国务院各部委、各直属机构人事部门，中央管理的企业：  根据《国务院机构改革和职能转变方案》和《国务院关于取消和调整一批行政审批项目等事项的决定》（国发〔2014〕27号）有关取消“房地产经纪人职业资格许可”的要求，为加强房地产经纪专业人员队伍建设，适应房地产经纪行业发展，规范房地产经纪市场，在总结原房地产经纪人员职业资格制度实施情况的基础上，人力资源社会保障部、住房城乡建设部制定了《房地产经纪专业人员职业资格制度暂行规定》和《房地产经纪专业人员职业资格考试实施办法》，现印发给你们，请遵照执行。  自本通知发布之日起，原人事部、原建设部发布的《关于印发〈房地产经纪人员职业资格制度暂行规定〉和〈房地产经纪人执业资格考试实施办法〉的通知》（人发〔2001〕128号）同时废止。  人力资源社会保障部  住房城乡建设部  2015年6月25日  **房地产经纪专业人员职业资格制度 暂行规定**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加强房地产经纪专业人员队伍建设，提高房地产经纪专业人员素质，规范房地产经纪活动秩序，根据《中华人民共和国城市房地产管理法》、《国务院机构改革和职能转变方案》和国家职业资格证书制度有关规定，制定本规定。  **第二条** 本规定适用于在房地产交易活动中，为促成房地产公平交易，从事存量房和新建商品房居间、代理等房地产经纪活动的专业人员。  **第三条** 国家设立房地产经纪专业人员水平评价类职业资格制度，面向全社会提供房地产经纪专业人员能力水平评价服务，纳入全国专业技术人员职业资格证书制度统一规划。  **第四条** 房地产经纪专业人员职业资格分为房地产经纪人协理、房地产经纪人和高级房地产经纪人3个级别。房地产经纪人协理和房地产经纪人职业资格实行统一考试的评价方式。高级房地产经纪人职业资格评价的具体办法另行规定。  　 房地产经纪专业人员英文为：Real Estate Agent Professionals  **第五条** 通过房地产经纪人协理、房地产经纪人职业资格考试，取得相应级别职业资格证书的人员，表明其已具备从事房地产经纪专业相应级别专业岗位工作的职业能力和水平。  **第六条** 人力资源社会保障部、住房城乡建设部共同负责房地产经纪专业人员职业资格制度的政策制定，并按职责分工对房地产经纪专业人员职业资格制度的实施进行指导、监督和检查。中国房地产估价师与房地产经纪人学会具体承担房地产经纪专业人员职业资格的评价与管理工作。  **第二章 考 试**  **第七条** 房地产经纪人协理、房地产经纪人职业资格实行全国统一大纲、统一命题、统一组织的考试制度。原则上每年举行1次考试。  **第八条** 中国房地产估价师与房地产经纪人学会负责房地产经纪专业人员职业资格评价的管理和实施工作，组织成立考试专家委员会，研究拟定考试科目、考试大纲、考试试题和考试合格标准。  **第九条** 人力资源社会保障部、住房城乡建设部指导中国房地产估价师与房地产经纪人学会确定房地产经纪人协理、房地产经纪人职业资格考试科目、考试大纲、考试试题和考试合格标准，并对其实施房地产经纪人协理、房地产经纪人职业资格考试工作进行监督、检查。  **第十条** 申请参加房地产经纪专业人员职业资格考试应当具备的基本条件：  　　（一）遵守国家法律、法规和行业标准与规范；  　　（二）秉承诚信、公平、公正的基本原则；  　　（三）恪守职业道德。  **第十一条** 申请参加房地产经纪人协理职业资格考试的人员，除具备本规定第十条的基本条件外，还必须具备中专或者高中及以上学历。  **第十二条** 申请参加房地产经纪人职业资格考试的人员，除具备本规定第十条的基本条件外，还必须符合下列条件之一：  　　（一）通过考试取得房地产经纪人协理职业资格证书后，从事房地产经纪业务工作满6年；  　　（二）取得大专学历，工作满6年，其中从事房地产经纪业务工作满3年；  　　（三）取得大学本科学历，工作满4年，其中从事房地产经纪业务工作满2年；  　　（四）取得双学士学位或研究生班毕业，工作满3年，其中从事房地产经纪业务工作满1年；  　　（五）取得硕士学历（学位），工作满2年，其中从事房地产经纪业务工作满1年；  　　（六）取得博士学历（学位）。  **第十三条** 房地产经纪人协理、房地产经纪人职业资格考试合格，由中国房地产估价师与房地产经纪人学会颁发人力资源社会保障部、住房城乡建设部监制，中国房地产估价师与房地产经纪人学会用印的相应级别《中华人民共和国房地产经纪专业人员职业资格证书》（以下简称房地产经纪专业人员资格证书）。该证书在全国范围有效。  **第十四条** 对以不正当手段取得房地产经纪专业人员资格证书的，按照国家专业技术人员资格考试违纪违规行为处理规定处理。  **第三章 职业能力**  **第十五条** 取得相应级别房地产经纪专业人员资格证书的人员，应当遵守国家法律、法规及房地产经纪行业相关制度规则，坚持诚信、公平、公正的原则，保守商业秘密，保障委托人合法权益，恪守职业道德。  **第十六条** 取得房地产经纪人协理职业资格证书的人员应当具备的职业能力：  　　（一）了解房地产经纪行业的法律法规和管理规定；  　　（二）基本掌握房地产交易流程，具有一定的房地产交易运作能力；  　　（三）独立完成房地产经纪业务的一般性工作；  　　（四）在房地产经纪人的指导下，完成较复杂的房地产经纪业务。  **第十七条** 取得房地产经纪人职业资格证书的人员应当具备的职业能力：  　　（一）熟悉房地产经纪行业的法律法规和管理规定；  　　（二）熟悉房地产交易流程，能完成较为复杂的房地产经纪工作，处理解决房地产经纪业务的疑难问题；  　　（三）运用丰富的房地产经纪实践经验，分析判断房地产经纪市场的发展趋势，开拓创新房地产经纪业务；  　　（四）指导房地产经纪人协理和协助高级房地产经纪人工作。  **第十八条** 取得相应级别房地产经纪专业人员资格证书的人员，应当按照国家专业技术人员继续教育及房地产经纪行业管理的有关规定，参加继续教育，不断更新专业知识，提高职业素质和业务能力。  **第四章 登 记**  **第十九条** 房地产经纪专业人员资格证书实行登记服务制度。登记服务的具体工作由中国房地产估价师与房地产经纪人学会负责。  **第二十条** 中国房地产估价师与房地产经纪人学会定期向社会公布房地产经纪专业人员资格证书的登记情况，建立持证人员的诚信档案，并为用人单位提供取得房地产经纪专业人员资格证书的信息查询服务。  **第二十一条** 取得房地产经纪专业人员资格证书的人员，应当自觉接受中国房地产估价师与房地产经纪人学会的管理和社会公众的监督。其在工作中违反相关法律、法规、规章或者职业道德，造成不良影响的，由中国房地产估价师与房地产经纪人学会取消登记，并收回其职业资格证书。  **第二十二条** 房地产经纪专业人员登记服务机构在登记服务工作中，应当严格遵守国家和本行业的各项管理规定以及学会章程。  **第五章 附 则**  **第二十三条** 通过考试取得相应级别房地产经纪专业人员资格证书，且符合《经济专业人员职务试行条例》中助理经济师、经济师任职条件的人员，用人单位可根据工作需要聘任相应级别经济专业职务。  **第二十四条** 本规定施行前，依据原人事部、原建设部印发的《〈房地产经纪人员职业资格制度暂行规定〉和〈房地产经纪人执业资格考试实施办法〉》（人发〔2001〕128号）要求，通过考试取得的房地产经纪人执业资格证书，与按照本规定要求取得的房地产经纪人职业资格证书效用等同。通过考试取得房地产经纪人协理资格证书效用不变。  **第二十五条** 本规定自2015年7月1日起施行。  **房地产经纪专业人员职业资格考试 实施办法**  **第一条** 人力资源社会保障部、住房城乡建设部按职责分工负责指导、监督和检查房地产经纪专业人员职业资格考试的实施工作。  **第二条** 中国房地产估价师与房地产经纪人学会具体负责房地产经纪专业人员职业资格考试的实施工作。  **第三条** 房地产经纪人协理职业资格考试设《房地产经纪综合能力》和《房地产经纪操作实务》2个科目。考试分2个半天进行，每个科目的考试时间均为2.5小时。  　　房地产经纪人职业资格考试设《房地产交易制度政策》、《房地产经纪职业导论》、《房地产经纪专业基础》和《房地产经纪业务操作》4个科目。考试分4个半天进行，每个科目的考试时间均为2.5小时。  **第四条** 房地产经纪专业人员职业资格各科目考试成绩实行滚动管理的办法。在规定的期限内参加应试科目考试并合格，方可获得相应级别房地产经纪专业人员职业资格证书。  参加房地产经纪人协理职业资格考试的人员，必须在连续的2个考试年度内通过全部（2 个）科目的考试；参加房地产经纪人职业资格考试的人员，必须在连续的4个考试年度内通过全部（4个）科目的考试。  **第五条** 符合《房地产经纪专业人员职业资格制度暂行规定》（以下简称暂行规定）第十条的基本条件和相应级别报名条件之一的，均可申请参加相应级别考试。  **第六条** 符合《暂行规定》相应级别考试报名条件之一的，并具备下列一项条件的，可免予参加房地产经纪专业人员职业资格部分科目的考试：  　　（一）通过全国统一考试，取得经济专业技术资格“房地产经济”专业初级资格证书的人员，可免试房地产经纪人协理职业资格《房地产经纪综合能力》科目，只参加《房地产经纪操作实务》1个科目的考试；  　　（二）按照原《〈房地产经纪人员职业资格制度暂行规定〉和〈房地产经纪人执业资格考试实施办法〉》（人发〔2001〕128号）要求，通过考试取得房地产经纪人协理资格证书的人员，可免试房地产经纪人协理职业资格《房地产经纪操作实务》科目，只参加《房地产经纪综合能力》1个科目的考试；  　 （三）通过全国统一考试，取得房地产估价师资格证书的人员；通过全国统一考试，取得经济专业技术资格“房地产经济”专业中级资格证书的人员；或者按照国家统一规定评聘高级经济师职务的人员，可免试房地产经纪人职业资格《房地产交易制度政策》1 个科目，只参加《房地产经纪职业导论》、《房地产经纪专业基础》和《房地产经纪业务操作》3个科目的考试。  　　参加1个或3个科目考试的人员，须在1个或连续的3个考试年度内通过应试科目的考试，方可获得房地产经纪专业人员职业资格证书。  　　免试部分科目的人员在报名时，应当提供相应证明文件。  **第七条** 参加考试由本人提出申请，按有关规定办理报名手续。考试实施机构按照规定的程序和报名条件审核合格后，核发准考证。参加考试人员凭准考证和有效证件在指定的日期、时间和地点参加考试。  　　中央和国务院各部门及所属单位、中央管理企业的人员按属地原则报名参加考试。  **第八条** 考点原则上设在直辖市和省会城市的大、中专院校或者高考定点学校。如确需在其他城市设置考点，须经中国房地产估价师与房地产经纪人学会批准。考试日期原则上为每年的第三季度。  **第九条** 坚持考试与培训分开的原则。凡参与考试工作（包括命题、审题与组织管理等）的人员，不得参加考试，也不得参加或者举办与考试内容相关的培训工作。应考人员参加培训坚持自愿原则。  **第十条** 考试实施机构及其工作人员，应当严格执行国家人事考试工作人员纪律规定和考试工作的各项规章制度，遵守考试工作纪律，切实做好从考试试题的命制到使用等各环节的安全保密工作，严防泄密。  **第十一条** 对违反考试工作纪律和有关规定的人员，按照国家专业技术人员资格考试违纪违规行为处理规定处理。 |